

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1차)  
(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마음센터 조성)



구 미 시

##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1차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3. .  
제출자 : 구미시장

### 1. 제안이유

- 장천면은 종합복지센터 외에는 생활복지·문화 인프라가 전무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서비스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
- 주민들이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하게 되고, 장기적으로는 인구 유출 및 정주 여건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큼
- 통합형 생활SOC가 부족하여 복지·문화·여가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필요함

### 2. 주요내용

#### 【취득재산】

- 위 치 :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 942-90, 942-91번지
- 대 상 : 건물 증축(증축 627㎡)
- 기준가격 : 3,162백만원(공사비 2,988, 설계비 144, 감리비 30)
- 사업기간 : 2024년 ~ 2027년
- 주요시설 : 목욕탕, 휴게라운지, 건강테라피존 등
-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  - 농촌협약 공모선정 : '23. 6월
  - 농촌협약 체결(농림축산식품부↔구미시) : '24. 4월
  -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: '24. 10월
  -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광역계획지원단(경상북도) 협의: '25. 9월
  - 기본계획 승인 고시 : '25. 11월
  -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및 설계발주 : '26. 1월
  -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: '26. 6월
  - 공사 착공 및 준공 : '26. 8월 ~ '27. 8월

### 3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, 같은법 시행령 제3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같은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#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1차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<sup>2</sup>, 백만원)

구 분	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1건	627	3,162
	1.기타 취득	건물	1건	627

## 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(총괄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<sup>2</sup>, 백만원)

구분	재 산 의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 매각 시기	사 유	재산 소유자	비고
	재산 구분	소 재 지	수 량(m <sup>2</sup> )					
총계			627	3,162				
취득	건물	장천면 상장리 942-90번지, 942-91번지	627	3,162	2027년	한마음센터 조성	구미시	증축

# 위치도



#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1차) 비용추계서 (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마음센터 조성)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2023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농촌협약을 통한 장천면 복지회관 증축 진행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- 「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(안)」에 의거하여 각 시설별 공사를 적용하여 책정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백만원)

구분 \ 연도		2024년	2025년	2025년	2027년	합계
세출	○ 설계비	-	144	-	-	144
	○ 공사비	-	464	1,100	1,424	2,988
	○ 감리비	-	-	-	30	30
	합계	-	608	1,100	1,454	3,162

### 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백만원)

구분 \ 연도		2024년	2025년	2025년	2027년	합계
국비		-	425	770	948	2,143
도비		-	43	77	95	215
시비		-	140	253	411	804
합계		-	608	1,100	1,454	3,162

### 5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실제 설계 및 공사 사정에 따라 재정수반액이 변경될 수 있음

### 6. 작성자

-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 구소민(☎480-5793)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금액	산출내역	비고
총계	3,162		
공사비	소계	2,988	
	건설 공사비	2,98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증축 × 1식 = 2,938,000,000원(93%)</li> <li>• 기타경비 × 1식 = 50,000,000원(1.5%)</li> </ul>
용역비	소계	174	
	설계비	14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실시설계용역 × 1식 = 144,000,000원(4.5%)</li> </ul>
	감리비	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감리용역 × 1식 = 30,000,000원(1%)</li> </ul>

# 관계법령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~ 5. 생략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

## 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38조(중요재산, 공공시설의 취득·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) ① 법 제47조 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"이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(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
## 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공유재산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

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

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## 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

## □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

제12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: 10억원
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

2.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1천제곱미터
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2천제곱미터

소 관 부 서		회 계 과 (농촌활력과)
입 안 자	과 장	임 응 건 (강 신 해)
	팀 장	전 유 향 (권 재 영)
	담 당 자	신 영 욱 (480-5072) (구 소 민) (480-5793)